

도서관 이용 규정

1972. 3. 1 제정 1999. 6. 1 개정
1982. 3. 1 개정 2000. 9. 1 개정
1983.11. 1 개정 2002. 9. 1 개정
1986. 6. 1 개정 2007.11. 2 개정
1988. 5. 1 개정 2009. 5.28 개정
1991. 1. 1 개정 2010. 6. 4 개정
1995. 2.25 개정 2012. 3. 1 개정
1998. 5.12 개정 2014. 9. 1 전면개정
2016. 4.25 일부개정 2017. 4. 1 일부개정
2018. 7. 1 일부개정
2019. 7. 1 일부개정
2024. 12. 1 일부개정
<학술정보서비스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의 편의 및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도서관 규정」 제3조(기구)의 모든 도서관에 적용한다.

② 분관도서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관도서관 실정에 맞는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이용자

제3조(이용 자격) 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본교 전임 및 비전임 교직원
3.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본부 임직원
4. 도서관 기간제 이용자
5.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 기간제 이용자는 본교의 「기간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이용증) 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이 없는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열람실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은 일요일, 공휴일 등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③ 방학기간, 시설 증·개축, 청소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제3장 인쇄 자료 이용

제6조(대출 및 반납) ① 자료의 대출 한도는 따로 정하며, 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 자격을 상실하거나 도서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기한과 관계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서, 희구서(稀觀書)
2. 참고도서(Reference books)
3. 연속간행물
4. 삭제 <2024. 12. 1.>
5. 지정도서
6. 고서, 고문서
7. 비도서자료
8. 장서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자료
9.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제8조(대출 부가 서비스) 도서 예약, 간편 대출, 특별 대출 등의 대출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

제9조(연체 및 제재) ①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면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② 대출 중에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반납기한 내에 변상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격을 상실한 자료로서 미납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① 열람 및 대출 중에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복제) ①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고서 등의 특정자료 복제는 본교의 「도서관 특정자료 관리 및 이용 내규」에 따른다.

③ 원본 자료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복제를 불허한다.

제12조(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① 타 도서관 자료를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전자자원 이용

제13조(용어 정의) 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이라 함은 도서관에서 구입, 구독, 수증, 구축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 중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제14조(이용 원칙) 전자자원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전제 하에 이용자 개인의 교육·연구 등의 학술적 목적에 한하여 이용이 허용되며, 기본 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에서 구입,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은 국내·외 저작권법과 계약서에 명기된 적법한 절차와 목적, 수단에 의해 이용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에서 구축한 전자자원은 해당 자료의 저작물 이용허락과 라이선스 등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교외접속을 허용하는 전자자원은 교외접속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공정 이용) 전자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1. 전자적, 기계적 수단(다운로딩 프로그램, 엔진, 로봇 등)으로 원문을 다운로드하거나 특정 자료의 전체 권·호를 다운로드하는 행위
2.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문 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명시된 저작물 이용허락 및 라이선스(CCL 등)를 벗어나는 이용 행위
4. 온라인 접속 권한을 양도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5. 개인 PC나 공용 서버가 사용자 및 관리자 부주의로 외부 접속을 허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개인의 학술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제5장 시설 이용

제16조(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①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대여 공간(그룹스터디룸, 스튜디오 등)을 의미하며, “좌석”은 열람실 및 PC 이용석 등을 지칭한다.

- ② 위 시설과 좌석은 도서관 시설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7조(이용 원칙) ① 도서관 “시설” 및 “좌석”은 학습, 연구 및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시설”과 “좌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 ③ 시설 및 좌석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이용 제한

제18조(제한 사유 및 제재 조치) ① 자료 관리 및 열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

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1. 시설 예약 후 미사용 2회 이상 : 1개월간 시설 예약 및 좌석 배정 중지
 2. 학생증 및 이용증의 대여 및 불법사용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3. 도서관 자료, 기기, 비품 등의 파손 또는 기능훼손 : 15일 이상 1년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및 현물배상
 4. 도서관 자료 및 기기, 비품 등의 무단반출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및 현물배상
 5.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 불응 : 10일 이상 3개월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6. 절도, 폭언, 폭행, 소란행위 등 열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 1년 이상 또는 영구 도서관 이용 중지
 7. 징계휴학 중인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 중지 <개정 2024. 12. 1.>
- ② 전자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제1항제4호의 제재 조치가 준용되며, 사안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 ③ 제한사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영구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개정(제7조 내용수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 ② (경과조치) 1. 2000년 8월 30일 이전에 대출한 자료의 연체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징수하되, 1책 1일당 30원, 부과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2. 제6조 제1호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자의 연체료는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지급되는 제 급여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7조 1호 내지 7호 개정, 제10조 1호 및 2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전면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6조, 제17조, 제48조, 제52조 및 제53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6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전면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3조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캠퍼스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제1조 내지 제4조, 제7조 개정,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8조 신설)

제2조(구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도서관 이용증 발급지침
2. 대출한도 및 기간 세부 지침
3. 자료변상 시행 세칙
4. 상호대차 운영에 관한 지침
5. 원문복사 운영에 관한 지침
6.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 지침
7. CDL 이용 규정

제3조(규정명 변경) 도서관 자료이용 규정을 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7조, 제8조, 제18조 개정)